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제818호 2014. 05. 30. (금)

선	기 관 의 장
람	

고 시

- 삼척시고시 제2014-61호 도계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_____ 2
- 삼척시고시 제2014-64호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기간 연장 고시 _____ 4
- 삼척시고시 제2014-65호 도로명주소 부여 개별 고시 _____ 5
- 삼척시고시 제2014-66호 도로명주소 폐지 개별 고시 _____ 7
- 삼척시고시 제2014-67호 201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 _____ 8

공 고

- 삼척시공고 제2014-353호 도로의 지정 공고 _____ 9
- 삼척시공고 제2014-358호 건축물대장 직권 폐쇄 공시 송달 공고 _____ 10
- 삼척시공고 제2014-359호 건축물대장 직권 폐쇄 공시 송달 공고 _____ 17
- 삼척시공고 제2014-360호 건축물대장 지번직권변경 공시 송달 공고 _____ 19
- 삼척시공고 제2014-361호 2014/2015년도 여잠이용개발계획 공고 _____ 22
- 삼척시공고 제2014-362호 삼척시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_____ 25
- 삼척시공고 제2014-368호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_____ 29
- 삼척시공고 제2014-369호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_____ 38
- 삼척시공고 제2014-370호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_____ 50
- 삼척시공고 제2014-371호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_____ 58
- 삼척시공고 제2014-372호 삼척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_____ 72
- 삼척시공고 제2014-373호 삼척시 지방세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_____ 93
- 삼척시공고 제2014-374호 삼척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_____ 106

공									
람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고시 제2014-61호

도계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1.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59조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강원도 건축주택과-16930, 2012.12.10) 후 사업시행하고자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열람을 실시하고자 동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을 고시 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삼척시(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30일

삼척시장

1. 사업의 목적

도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 확보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차장 및 소규모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316-19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명 칭 : 도계소도읍 도계리 경관도로 주변 환경 정비사업

4. 소요사업비 : 500백만원

5. 사업 추진 기간 : 2014. 6. 1 ~ 8. 31

6. 사업의 내용 및 규모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면적(㎡)	비 고
도계소도읍 도계리 경관도로 주변 환경 정비사업	-공원조성 1식 -주차장 1식 -기판시설 정비 1식	885	

7.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삼척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유명호
- 주 소 : 삼척시 중앙로 296번지 (교동)

8. 열람장소 : 삼척시청 도시디자인과 (☎ 033-570-3447)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10.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디자인과(☎033-570-3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소유권

■ 사업명 : 도계소도읍 도계리 경관도로 주변 환경 정비사업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명	
1	도계읍 도계리	316-19	묘지	273	273	국 (재정경제부)					
2	도계읍 도계리	316-20	전	612	612						

삼척시고시 제2014-64호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기간 연장 고시

자연환경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강원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제28조 규정에 의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입산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연장고시합니다.

1. 대상지역 및 구간

구분	실시 구간		연장 (면적)	당초 실시기간	연장 기간	비고
	시점	종점				
중봉계곡	하장면 중봉리 중봉분교(폐교)	하장면 중봉리 당골목 입구 (중봉계곡정상)	5km (0.75km ²)	2012.06.01 ~ 2014.05.31	2014.06.01 ~ 2017.05.31	3년 연장

2. 기 간 : 2014. 6. 1 ~ 2017. 5. 31 (3년간)

3. 실시사유 : 자연생태계보호 및 계곡 수질보전

4. 금지행위 : 허가없이 입산하는 행위

- 야영, 취사, 피서, 야유회, 목욕, 세차, 낚시, 물놀이 등

5. 금지행위 위반시 :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근거 :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2014. 5. 28.

삼척시장

삼척시고시 제2014-65호

도로명주소 부여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의거 우리시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개별 고시합니다.

2014. 05. 30.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2길 126-17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부여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디자인과(☎570-394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05.30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개별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새주소)	고시일	부여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86-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2길 126-17	20140530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 사용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86-8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2길 126-15	20140530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 사용	
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86-9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2길 126-7	20140530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 사용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82-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원평길 46-10	20140530	건물신축	20090626	마을명(매원리), 원평해수욕장 명칭활용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통막리 1646-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문의제로 3152-34	20140530	건물신축	20090626	자연지형명칭 반영 (문의제로)	
6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469-2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덕풍길 167	20140530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 지형지물 (덕풍계곡) 명칭활용	
7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444-9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5길 19	20140530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 방식적용 (사직로분기)	
8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사전리 산38-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영경로 201-29	20140530	건물신축	20090626	문화제 (영경묘) 명칭활용	
	이	하		여		백	

삼척시고시 제2014-66호

도로명주소 폐지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의거 우리시 건물
별실 등에 따른 폐지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5. 30.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폐지:

순번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비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1길 59-22	20140530	건물 철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디자인과(☎570-3946~9)에 문
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등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삼척시고시 제2014-67호

201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등)의 절
차를 거쳐 조사·산정한 2014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니,
결정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 기간내 신청을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30일

삼척시장

□ 201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결정·공시일 : 2014. 5. 30
- 지가 기준일 : 2014. 1. 1기준
- 대 상 토 지 : 143,346필지
- 이의신청기간 : 2014. 5. 30 ~ 6. 30

□ 이의신청 절차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방법 :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식에 기재
후 시청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14. 7. 1 ~ 7. 30
-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
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
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765, 3763, 376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공고 제2014-353호

도로의 지정·공고

강원도 삼척시 마달동 110-2번지 상에 단독주택 용도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가 있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2014년 05월 23일

삼척시장

- 도로 위치 : 강원도 삼척시 마달동 110-1, 110-2번지 중 일부
- 도로 현황 : 길이 : 17.4m, 너비 : 4m, 면적 : 70㎡
-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 면적	제외 면적	지정 면적	
합계			4,126		70	
마달동	110-1	전	1,666	1,649	17	오준열
마달동	110-2	전	2,460	2,407	53	천복량

삼척시공고 제2014-358호

건축물대장 직권폐쇄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시보,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4. 05. 26 ~ 2014. 06. 10 (15일간)
3. 직권말소일 : 2014. 03. 18.(첨부서류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폐쇄	
나. 당사자	성명(명칭)	김성* 외 162인
	주소 (대장상주소)	증산리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지 못한 내용	건축물대장 폐쇄	
	지번 : 첨부서류참조 첨부서류참조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570-3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5. 26

삼척시장

대상자 명단, 주소, 대지위치 및 건축물 현황

번호	성명	주민번호 (대장상)	주소 (대장상)	대지위치	건축물 현황	정리일자
1	김성*	無	증산리	증산동 78	주1 1층 목조 단독주택 40㎡	2014.03.18
2	최봉*	070515-1*****	우지리2 122	우지동 122	주2 1층 목조 주택 41.98㎡	2014.03.18
3	변영*	320919-1*****	우지리4 산177-3	우지동 산177-3	주1 1층 목조 주택 48.99㎡	2014.03.18
4	심익*	041115-1*****	마달리1반 33번지	마달동 7	주1 1층 목조 주택 40㎡	2014.03.18
5	장두*	240925-1*****	마달리2반 26	마달동 26	주1 1층 목조 주택 30.81㎡	2014.03.18
6	이용*	420625-1*****	마달리1번지	마달동 52	주1 1층 목조 주택 32.99㎡	2014.03.18
7	김대*	無	마달리2반 92-22	마달동 92-22	주1 1층 목조 주택 41.98㎡	2014.03.18
8	장연*	無	마달리2반 109	마달동 109	주1 1층 목조 주택 40.32㎡	2014.03.18
9	권쇄*	無	마달리 4반 109	마달동 109	주2 1층 목조 주택 24㎡	2014.03.18
10	김진*	390311-1*****	4반 109	마달동 109	주3 1층 목조 주택 50.4㎡	2014.03.18
11	최인*	040426-1*****	마달리4반 148	마달동 148	주1 1층 목조 주택 32.99㎡	2014.03.18
12	오순*	無	갈천리 2반	갈천동 2	주1 1층 목조 주택 39.14㎡	2014.03.18
13	김용*	無	자지리2반 9번지	자원동 9	주1 1층 목조 주택 40㎡	2014.03.22
14	김원*	無	평전리2반 47	평전동 47	주1 1층 목조 주택 42㎡	2014.03.23
15	김원*	無	평전리 64	평전동 64	주1 1층 목조 주택 17.76㎡	2014.03.23
16	최인*	無	등봉2리1반	등봉동 129	주1 1층 목조 주택 70.76㎡	2014.03.23
17	정의*	280116-1*****	등봉2리1반	등봉동 131	주1 1층 목조 주택 32㎡	2014.03.23
18	정택*	無	등봉2리1반	등봉동 133	주1 1층 목조 주택 47㎡	2014.03.23
19	정태*	無	등봉2리	등봉동 166	주1 1층 목조 주택 35.26㎡	2014.03.23
20	안태*	無	등봉2리1반	등봉동 산166	주1 1층 목조 주택 24.84㎡	2014.03.23
21	김홍*	無	81	도경동 81	주2 1층 목조 주택 27.27㎡	2014.03.23
22	이석*	無	132-2	도경동 132-2	주1 1층 목조 주택 36㎡	2014.03.23
23	최환*	161211-1*****	177	도경동 177	주1 1층 목조 주택 47㎡	2014.03.23
24	최형*	310915-1*****	237	도경동 237	주1 1층 목조 주택 49.98㎡	2014.03.23
25	정윤*	351001-1*****	1반	마평동 21	주1 1층 목조 주택 39.23㎡	2014.03.23
26	채수*	100119-1*****	1반	마평동 176	주1 1층 목조 주택 16.99㎡	2014.03.23

27	박복*	501012-1*****	건지리41-1	건지동 41-1	주1 1층 목조 주택 17.5㎡	2014.03.23
28	김진*	無	건지리1반	건지동 84	주1 1층 목조 주택 28㎡	2014.03.23
29	정갑*	無	건지리1반84	건지동 84	주2 1층 목조 주택 40㎡	2014.03.23
30	박범*	無	129-1	건지동 129-1	주1 1층 목조 단독주택 27㎡	2014.03.23
31	김용*	無	월당3반	월당동 68	주1 1층 목조 주택 30㎡	2014.03.23
32	박영*	無	정상1리6반	성남동4	주1 1층 목조 주택 23.9㎡	2014.03.23
33	함재*	301225-1*****	120번지	성남동120	주1 1층 목조 주택 15.37㎡	2014.03.23
34	이민*	無	남양1리1반	남양동 15	주1 1층 목조 주택 18.71㎡	2014.04.01
35	유계*	無	당저1리4반	남양동 17-110	주1 1층 브릭조 주택 55.78㎡	2014.04.01
36	정연*	無	남양2리5반	남양동 42	주1 1층 목조 주택 60.5㎡	2014.04.01
37	박성*	無	남양2리8반	남양동 43-4	주1 1층 시멘트블록조 주택 38.38㎡	2014.04.01
38	정연*	無	남양2리6반	남양동 54	주1 1층 목조 주택 15.8㎡	2014.04.01
39	장연*	無	남양2리9반	남양동 54	주2 1층 목조 주택 50.97㎡ 주2 1층 브릭조 창고 20㎡	2014.04.01
40	김경*	無	남양2리7반	남양동 54	주3 1층 목조 주택 17.98㎡	2014.04.01
41	최재*	無	남양2리6반	남양동 54-14	주1 1층 목조 주택 41.79㎡	2014.04.01
42	김봉*	無	남양2리6반	남양동 54-18	주1 1층 시멘트블록조 주택 26.98㎡ 주1 1층 시멘트블록조 주택 16.2㎡	2014.04.01
43	엄구*	無	2/2	남양동 73-1	주1 1층 목조 주택 36.37㎡	2014.04.01
44	신홍*	無	남양 2/2	남양동 105	주1 1층 목조 영업용주택 103.47㎡ 주1 1층 목조 창고 46.15㎡ 주1 1층 목조 주택 23.5㎡	2014.04.01
45	조선** ^(영)	110111-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40	남양동 105	주2 1층 목조 점포 247.55㎡ 주2 1층 블럭조 단독주택 154.39㎡ 주2 2층 목조 단독주택 54.99㎡	2014.04.01
46	박봉*	210708-2*****	남양1리1반	남양동 154	주1 1층 목조 단독주택 28.8㎡	2014.04.01
47	김동*	無	남양1리5반	남양동 162	주1 1층 목조 단독주택 46.55㎡ 주1 1층 브릭조 다목적주택 40.26㎡	2014.04.01
48	변순*	無	남양1리2반	남양동 163	주1 1층 목조 주택 20.66㎡	2014.04.01
49	김형*	無	남양1리2반	남양동 163	주3 1층 목조 단독주택 21.05㎡	2014.04.01
50	황기*	無	1/1	남양동 176	주1 1층 목조 주택 50.58㎡	2014.04.01
51	김명*	無	1/2	남양동 176	주2 1층 목조 주택 32.3㎡	2014.04.01
52	노노*	無	1/2	남양동 283	주1 1층 목조 주택 25.48㎡	2014.04.01

53	한영*	無	2/2	남양동 산1	주1 1층 목조 주택 59.5㎡ 주1 1층 목조 주택(별관) 20.23㎡ 주1 2층 목조 주택 38.02㎡	2014.04.01
54	김무*	440125-1*****	52	남양동 43-4	주2 1층 브릭조 주택 26.5㎡	2014.04.03
55	이규*	無	남양리 16-8	남양동 16-8	주1 1층 벽돌조 단독주택 66.34㎡	2014.04.03
56	김대*	無	남양리 18-3	사직동 18-3	주1 1층 벽돌조 주택 79.1㎡	2014.04.03
57	이상*	無	사직2리2반	사직동 24	주1 1층 목조 주택 25.28㎡	2014.04.03
58	정정*	無	185	사직동 185	주3 1층 시멘트벽돌조 주택 59.14㎡	2014.04.03
59	김재*	501020-1*****	사직2리4반	사직동 215	주1 1층 목조 주택 34.06㎡	2014.04.03
60	심백*	無	사직2리	사직동 220	주1 1층 목조 주택 45.9㎡	2014.04.03
61	김경*	無	사직1리1반	사직동 292	주1 1층 브릭조 점포 21.09㎡	2014.04.03
62	권태*	320210-1*****	사직동 307	사직동 292	주1 1층 목조 주택 49.76㎡	2014.04.03
63	김광*	無	사직1리1반	사직동 293	주1 1층 브릭조 주택 54.22㎡	2014.04.03
64	이유*	無	오분2리1반	오분동 72-6	주1 1층 목조 단독주택 30㎡	2014.04.03
65	김준*	無	오분1리5반	오분동 142	주1 1층 목조 주택 39.36㎡	2014.04.10
66	이순*	無	146-41	오분동 146-41	주1 1층 목조 단독주택 66㎡	2014.04.10
67	최순*	無	오분1리1반	오분동 457	주1 1층 목조 주택 33.8㎡	2014.04.10
68	진명*	無	조비2리2반	조비동 54-4	주1 1층 목조 단독주택 47.5㎡	2014.04.10
69	김성*	無	정상7리1반	정상동 37	주1 1층 목조 주택 26.28㎡	2014.04.10
70	박중*	無	정상3리1반	정상동 47	주1 1층 목조 주택 26.64㎡	2014.04.10
71	최병*	無	정상3리2반	정상동 48	주1 1층 목조 영입용 및 주택 27.5㎡	2014.04.10
72	홍순*	120822-1*****	정상3리2반	정상동 48	주1 1층 목조 주택 33.09㎡	2014.04.10
73	함정*	500320-1*****	정상3리3반 73번지	정상동 73	주1 1층 목조 주택 42.97㎡	2014.04.10
74	김정*	610530-1*****	정상동 77-14	정상동 77-14	주1 1층 목조 단독주택 63.7㎡	2014.04.10
75	추유*	無	정상동 1/6	정상동 93	주1 1층 목조 단독주택 24.44㎡	2014.04.14
76	정복*	271020-1*****	정상1리4반	정상동 94	주1 1층 목조 단독주택 20.54㎡	2014.04.14
77	고익*	無	정상1리6반	정상동 100	주1 1층 브릭조 주택 32.98㎡	2014.04.14
78	박옥*	無	정상1리6반	정상동 100	주2 1층 목조 주택 22.54㎡	2014.04.14
79	이성*	200730-1*****	정상1리6반	정상동 100	주4 1층 목조 주택 27.25㎡	2014.04.14
80	김태*	無	정상1리6반	정상동 100	주5 1층 목조 주택 21.55㎡	2014.04.14

81	김상*	411218-1*****	정상2리1반	정상동 145	주2 1층 목조 단독주택 13㎡	2014.04.14
82	양덕*	170324-1*****	정상2리1반	정상동 145	주3 1층 목조 주택 21.15㎡	2014.04.14
83	전웅*	171120-1*****	정상1리4반	정상동 145	주4 1층 목조 단독주택 35.23㎡	2014.04.14
84	주영*	081228-1*****	정상2리1반	정상동 146-7	주1 1층 목조 주택 23㎡	2014.04.14
85	신원*	240820-1*****	유지리1반	정상동 245	주1 1층 목조 주택 35.76㎡	2014.04.14
86	조상*	131012-1*****	유지리1반	정상동 246-9	주1 1층 목조 단독주택 62.77㎡	2014.04.14
87	김정*	910614-0*****	유지리2반	정상동 253	주1 1층 목조 주택 47.17㎡	2014.04.14
88	정재*	無	정상1리2반	정상동 261	주1 1층 목조 주택 17.52㎡	2014.04.14
89	송병*	無	삼척읍 정상리 275	정상동 275	주1 1층 목조 주택 66㎡	2014.04.14
90	안상*	無	유지리2반	정상동 275	주2 1층 브릭조 주택 41.32㎡	2014.04.14
91	성도*	130501-1*****	정상동 1/2	정상동 282	주1 1층 브릭조 단독주택 32.79㎡	2014.04.14
92	김의*	181101-1*****	봉황1리3반 370	정상동 370	주3 1층 목조 단독주택 14.12㎡	2014.04.17
93	길명*	310528-1*****	봉황1리3반	정상동 370	주3 1층 목조 단독주택 12.25㎡	2014.04.17
94	최순*	無	봉황1리3반 372	정상동 370	주6 1층 목조 단독주택 5.59㎡	2014.04.17
95	김주*	無	봉황1리1반 372	정상동 372	주1 1층 목조 단독주택 54.98㎡	2014.04.17
96	정필*	無	봉황1리2반 372	정상동 372	주4 1층 목조 주택 22.98㎡	2014.04.17
97	신영*	無	봉황1리3반 372	정상동 372	주5 1층 브릭조 단독주택 55.77㎡	2014.04.17
98	김진*	330910-1*****	정상동 392	정상동 374	주2 1층 목조 단독주택 52.44㎡	2014.04.17
99	김정*	050719-1*****	봉황1리1반 379	정상동 378	주1 1층 목조 단독주택 42.15㎡	2014.04.17
100	김태*	無	봉황1리1반	정상동 378	주3 1층 목조 단독주택 23.08㎡	2014.04.17
101	박용*	無	봉황1리1반	정상동 378	주4 1층 목조 단독주택 49.79㎡	2014.04.17
102	황태*	431208-1*****	봉황1리1반 379	정상동 379	주1 1층 목조 주택 24.3㎡	2014.04.17
103	강덕*	無	봉황2리2반	정상동 379	주2 1층 목조 주택 50.4㎡	2014.04.17
104	한임*	無	봉황2리1반	정상동 379	주2 1층 세멘트브릭조 주택 56.69㎡	2014.04.17
105	김남*	無	봉황2리2반	정상동 381	주1 1층 목조 주택 17.98㎡	2014.04.17
106	노경*	180224-1*****	봉황2리2반	정상동 381	주3 1층 목조 주택 32.5㎡	2014.04.17
107	이준*	330113-1*****	정상동 376-1	정상동 381	주5 1층 목조 단독주택 41.04㎡	2014.04.17
108	심찬*	240123-1*****	봉황2리3반	정상동 386	주1 1층 목조 주택 28.03㎡	2014.04.17
109	심기*	無	유지리6반	정상동 407	주1 1층 불릭조 창고 14.34㎡	2014.04.17

110	김연*	220922-1*****	정상3리9반	정상동 산15	주1 1층 목조 주택 18.01m ²	2014.04.17
111	천순*	360204-1*****	정상3리8반 산15	정상동 산15	주1 1층 목조 주택 39.33m ²	2014.04.17
112	김순*	460121-1*****	정상동 산15	정상동 산15	주1 1층 목조 단독주택 56.88m ²	2014.04.17
113	김선*	無	정상3리8반	정상동 산15	주1 1층 목조 주택 13.98m ²	2014.04.17
114	박문*	180201-1*****	유지2반 산49	정상동 산49	주1 1층 목조 단독주택 23.62m ²	2014.04.17
115	권영*	無	정상3리7반	정상동 산71	주1 1층 목조 주택 14.31m ²	2014.04.17
116	부녀*	080612-1*****	유지리6반	정상동 354	주1 1층 목조 주택 19.47m ²	2014.04.17
117	박흥*	無	봉황1리3반	정상동 369	주1 1층 목조 단독주택 30.41m ²	2014.04.17
118	김의*	無	봉황1리3반 370	정상동 370	주2 1층 목조 단독주택 43.5m ²	2014.04.17
119	홍동*	320217-1*****	정하1리6반	정하동 146	주1 1층 목조 주택 19.24m ²	2014.05.12
120	한태*	230126-1*****	정하1리6반	정하동 146	주1 1층 목조 주택 23.37m ²	2014.05.12
121	정병*	441228-1*****	정하1리6반	정하동 146	주1 1층 목조 주택 16.23m ²	2014.05.12
122	김명*	無	정하1리7반	정하동 155	주1 1층 목조 주택 25.12m ²	2014.05.12
123	조석*	470407-1*****	정하4리4반	정하동 66	주1 1층 목조 주택 16m ²	2014.05.10
124	장환*	060910-1*****	정하3리1반	정하동 69	주1 1층 목조 주택 19.6m ²	2014.05.10
125	정갑*	無	정하1리8반	정하동 72	주1 1층 목조 주택 17.98m ²	2014.05.10
126	이영*	無	노곡면 금계리 180	정하동 73	주1 1층 목조 주택 42.64m ²	2014.05.10
127	김홍*	無	정하1리4반	정하동 108	주1 1층 목조 주택 25.05m ²	2014.05.10
128	박철*	370120-1*****	정하1리3반	정하동 108	주1 1층 브릭조 주택 18.48m ²	2014.05.10
129	유국*	140820-1*****	정하1리2반	정하동 108	주1 1층 목조 점포 66.2m ²	2014.05.10
130	박용*	221016-1*****	정하1리4반	정하동 108	주1 1층 목조 주택 20.4m ²	2014.05.10
131	김남*	無	정하1리1반	정하동 108	주1 1층 목조 주택 48m ²	2014.05.10
132	김부*	無	정하1리3반	정하동 108	주1 1층 목조 주택 23.87m ²	2014.05.10
133	김치*	無	정하1리2반	정하동 108	주1 1층 목조 주택 29.12m ²	2014.05.10
134	조복*	230518-2*****	정하3리3반	정하동 산3	주4 1층 목조 주택 14.58m ²	2014.05.20
135	이재*	410525-1*****	정하3리1반	정하동 산3	주5 1층 목조 주택 14.25m ²	2014.05.20
136	권범*	100524-1*****	정하3리1반	정하동 산3	주7 1층 목조 주택 19.5m ²	2014.05.20
137	진귀*	071018-1*****	정하1리8반	정하동 산3	주8 1층 목조 주택 43.11m ²	2014.05.20
138	이원*	380315-1*****	정하1리5반	정하동 산3	주9 1층 목조 주택 18.24m ²	2014.05.20

139	최광*	361119-1*****	정하3리3반	정하동 산3	주15 1층 목조 주택 18.91m ²	2014.05.20
140	김대*	無	정하1리8반	정하동 산3	주18 1층 목조 주택 25.38m ²	2014.05.20
141	김윤*	200814-1*****	정하3리8반	정하동 산3	주19 1층 목조 주택 20m ²	2014.05.20
142	김욱*	140315-1*****	정하4리6반	정하동 산3	주21 1층 목조 주택 29.25m ²	2014.05.20
143	김복*	無	정하3리3반	정하동 산3	주22 1층 목조 주택 18.74m ²	2014.05.20
144	권상*	490116-1*****	정하3리3반	정하동 산3	주23 1층 목조 주택 35.78m ²	2014.05.20
145	이대*	150830-1*****	정하3리8반	정하동 산3	주25 1층 목조 주택 23.73m ²	2014.05.20
146	홍학*	050519-1*****	정하3리8반	정하동 산3	주27 1층 목조 주택 16.82m ²	2014.05.20
147	박동*	030423-1*****	정하3리8반	정하동 산3	주28 1층 목조 주택 30.15m ²	2014.05.20
148	박귀*	無	113	근산동 113	주1 1층 목조 주택 29.58m ²	2014.05.20
149	김병*	170308-1*****	5반	도계읍 고사리 85-4	주1 1층 목조 단독주택 22.81m ²	2014.05.21
150	김등*	無	4반	도계읍 고사리 사83-9	주1 1층 목조 단독주택 43.24m ²	2014.05.21
151	임병*	無	1리1반	도계읍 녹구리 58-8	주1 1층 목조 주택 86.57m ² 주2 1층 목조 주택 39.86m ²	2014.05.21
152	박원*	370715-1*****	2리9반	도계읍 녹구리 88-1	주1 1층 목조 주택 71.6m ²	2014.05.21
153	남중*	無	100-1	도계읍 도계리 100-1	주1 1층 토담집(蘇블릭) 주택 18.81m ²	2014.05.21
154	박윤*	610617-2*****	1/13	도계읍 도계리 271	주1 1층 목조 점포및주택 32.39m ²	2014.05.21
155	윤태*	無	1리3반	도계읍 도계리 348-2	주2 1층 목조 주택 72.72m ²	2014.05.21
156	김복*	無	1/13	도계읍 도계리 사140-4	주1 1층 목조 주택 37.95m ²	2014.05.21
157	조재*	350215-1*****	208번지	도계읍 상덕리 260-1	주1 1층 조적조 단독주택 68.78m ² 부1 1층 블럭조 화장실 2.16m ²	2014.05.21
158	심재*	440928-1*****	전두1리14반	도계읍 전두리 14	주1 1층 목조 단독주택 50.64m ²	2014.05.21
159	김재*	291013-2*****	83	도계읍 전두리 83	주1 1층 목조 점포 13.22m ² 주1 2층 목조 점포 13.22m ²	2014.05.21
160	오금*	430327-2*****	4리1반	도계읍 흥전리 12-5	주1 1층 세면블럭조 단독주택 48.51m ²	2014.05.21
161	함현*	290516-1*****	1리8반	도계읍 흥전리 사47-4	주1 1층 목조 단독주택 28m ²	2014.05.21
162	장도*	無	흥전1리9반	도계읍 흥전리 사92-11	주1 1층 목조 단독주택 43.87m ²	2014.05.21
163	조성*	無	도계읍 전두1리 3반	도계읍 심포리 83-1	주1 1층 세면블럭조 주택 100.8m ²	2014.05.21

삼척시공고 제2014-359호

건축물대장 직권폐쇄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되어 존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폐쇄 후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사망 및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시송달 방법 : 시보,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4. 05. 26 ~ 2014. 06. 10 (15일간)
- 3. 직권말소일 : 2014. 04. 10.(첨부서류참조)
-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폐쇄	
나. 당사자	성명(명칭)	이재* 외 1인
	주소 (대장상주소)	정상동 25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폐쇄	
	지번 : 첨부서류참조	
마.법적근거 및 조문	첨부서류참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570-3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5. 26

삼 척 시 장

대상자 명단, 주소, 대지위치 및 건축물 현황

번호	성명	주민번호 (대장상)	주소 (대장상)	대지위치	건축물 현황	정리일자
1	이재*	120128-1*****	정상동 25	정상동 52	주1 1층 목조 단독 주택 26.28㎡	2014.04.10
2	김태*	611016-1*****	삼척시성남동 180-8대일2차 빌라102	정상동 145	주1 1층 목조 주택 13㎡	2014.04.14

삼척시공고 제2014-360호

건축물대장 지번직권변경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합병 등으로 토지와 건축물이 불일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변경 후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사망 및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변경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시보,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4. 05. 26 ~ 2014. 06. 10 (15일간)
3. 직권변경일 : 2014. 03. 13.(첨부서류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지번직권변경
나. 당사자	성명(명칭)	김월* 외 15인
	주소 (대장상주소)	교1리2반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지번직권변경 지번 : 첨부서류참조	
	첨부서류참조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570-3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5. 26

삼 척 시 장

대상자 명단, 주소, 대지위치 및 변동내용

번호	소유자	주민번호 (대장상)	주소 (대장상)	대지위치	변동내용	정리일자
1	김월*	140220-2*****	교1리2반	교동 615	교동 615 ⇒ 교동 566-12	2014.03.13
2	채계* 외 8인	231029-2*****	삼척시 교동 560	교동 557	교동 557 ⇒ 교동 557-6	2014.03.13
3	석희*	720503-1*****	삼척시 마달1길91,103호 (마달동, 누가빌라)	당저동 108	당저동 108 ⇒ 당저동 108-1	2014.03.04
4	장봉*	無	마달리 4반	마달동 산34	마달동 산34 ⇒ 마달동 산34-1	2014.03.18
5	김순*	180522-1*****	38	중산동 38	중산동 38 ⇒ 중산동 38-3	2014.03.18
6	김필*	無	등봉2리 2반	등봉동 233	등봉동 233 ⇒ 등봉동 233-2	2014.03.23
7	산승*	無	등봉2리 2반	등봉당 283	등봉당 283 ⇒ 등봉동 239-2	2014.04.02
8	김기*	無	적노리1반	적노동 234	적노동 234 ⇒ 적노동 243-1	2014.04.10
9	김영*	490218-1*****	정상동 90	정상동 산15	정상동 산15 ⇒ 정상동 산15-1	2014.04.19
10	김금*	450510-2*****	사직동 319-1 원조임대아파트102-508	정상동 235	정상동 235 ⇒ 정상동 235-5	2014.04.14
11	엄금*	770922-2*****	동해시 구미4길1,307호 (구미동,현진아파트)	정상동 100	정상동 100 ⇒ 정상동 산55-1	2014.04.14
12	정연*	160915-1*****	정하1리6반	정하동 146	정하동 146 ⇒ 정하동 산7	2014.05.12
13	김봉*	480227-1*****	포항시 지곡동 166-23	정하동 146	정하동 146 ⇒ 정하동 32	2014.05.12
14	정민*	211117-1*****	정하1리6반	정하동 146	정하동 146 ⇒ 정하동 146-3	2014.05.12
15	조억*	031006-1*****	정하1리1반	정하동 108	정하동 108 ⇒ 정하동 112	2014.05.10
16	양성*	230109-1*****	정하4리3반	정하동 산2	정하동 산2 ⇒ 정하동 41-145	2014.05.12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지번직권변경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공고 제2014-361호

2014/2015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공고

수산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 조 규정에 의거 「2014/2015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승인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14.6.27.까지 우리시 해양수산과로 어업면허우선순위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 033)570-34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개발계획 수면 도면은 삼척시 해양수산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28일

삼척시장

□ 2014/2015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어업별	신청내용				승인여부		승인조건 및 불승인 사유
	위치 (지선)	수면 번호	면적 (전/ha)	개발사유	승인 (전/ha)	불승인 (전/ha)	
계			3 / 31.5		3 / 31.5	-	
정치망	근덕면 용화리	①	22.5	대체개발 (이설)	22.5	-	• 기존 정치망어업(14-1호,22.5ha)포기후 남측 350m 이설하여 개발 • 포기어장 청소후 개발
정치망	근덕면 용화리	②	5.0	대체개발 (이설)	5.0	-	• 기존 정치망어업(12-2호,5.0ha)포기후 외측 130m 이설하여 개발 • 포기어장 청소후 개발
정치망	근덕면 초곡리	③	4.0	대체개발 (이설)	4.0	-	• 기존 정치망어업(03-1호,4.0ha)포기후 북측 465m 이설하여 개발 • 포기어장 청소후 개발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21일
신청인	①성명		②국적	
	③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④주소			
배우자 및 직계비속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개발계획 내용	⑦어업의 종류		⑧양식방법	
	⑨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			
	⑩수면의 번호	제 호	⑪수면의 면적	ha
	⑫수면의 위치		인접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자로 결정되고자 신청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한다) 1부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및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각 1부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한다) 1부 4.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1부 5. 여권 사본(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수수료 1,000원

□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신청시 구비서류

-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수산기술자만 해당한다)
-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한다)
-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삼척시 공고 제2014-362호

「삼척시 주민의 조례`제정 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이 강원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감사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를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감사청구 할 수 있는 19세 이상 연서주민 수 개정(안 제2조제2항)
 - 200명 → 150명 이상
-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삼척시청 기획감사실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교동) 우편번호 : 245-701
전 화 : 033-570-3718 FAX : 033-570-3131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고시·공고란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삼척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200명”을 “150명 이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및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2조(연서 주민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삼척시(이하 “시”라한다)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수) ① ----- 제15조제1항에 따라-----
② 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강원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시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19세 이상 주민 200명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3조(주관부서) ①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제정·개폐청구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실·과 및 사업소에서 담당한다.	제3조(주관부서)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②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감사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공고 제2014-368호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삼척시장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근거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법령상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하며,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세의 징수순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가. 서류 송달의 위임·위탁자 중 “통·리·반장”을 “통·리장”으로 함(안 제8조 제4항).
- 나. 지방세의 우선 순위를 도세를 우선 징수하고 그 중 목적세를 우선 징수하도록 변경함(안 제12조).
- 다. 법 제65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14조).
- 라. 근거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용어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안 제8조제2항, 안 제8조제4항, 안 제8조제5항,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5조 제1항제2호, 안 제15조제4항,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22조, 안 제24조, 안 제25조제1항제6호, 안 제32조, 안 제34조, 안 제38조제2호, 안 제47조제1항, 안 제52조제1호)

3. 행정사항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삼척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관·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파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우 245-701) 삼척시청 세무과(☎033-570-3297/팩스570-3134)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을 ““조례로 정하는 바”란”으로, “리·반장”을 “리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리·반장”을 “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 제9조의 제목 (“보통우편 송달부”)를 (“일반우편 송달부”)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보통우편의 방법으로”를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로, “보통우편”을 각각 “일반우편”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우편물접수인”을 “통신일부인”으로 한다.
- 제11조 중 “체납”을 “체납한”으로, “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체납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한다.
- 제12조 중 “징수하여야”를 “징수하고, 도세나 시세 중에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징수하여야”로 한다.
-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기 10일 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주무관청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제1항제2호 중 “내)”를 “내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초에”를 “이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 사유와”를 “등의 사유가 있거나”로 한다.

제16조의 제목“(공탁 등)”을“(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탁하거나 또는 시금고”를 “시금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시세의 수납)”을“(세무공무원의 수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를“(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처리)”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요구여야”를 “요구하여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 중 “필한”을 “마친”으로 한다.

제32조 단서 중 “공동사용자”를 “공유자”로 한다.

제34조 중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을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납부자”란”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으로”로 한다.

제38조제2호 중 “같은 조제5항”을 “영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채납자(도세)”를 “고액·상습채납자(도세)”로 한다.

제52조제1호 중 “질병 기타”를 “질병, 그 밖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중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일반우편 ----- -----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생략)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지하는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이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일반우편 ----- ----- ③ (현행과 같음) ④ ----- “조례로 정하는 방법”란 ----- 리장 ----- ----- 리장 ----- ----- ⑤ ----- ----- 범위 ----- -----
제9조(보통우편 송달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받아 보관하여야 한	제9조(일반우편 송달부)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 --- 일반우편 ----- ----- 통신 일부인 -----

다.

제11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시장은 납세의무자가 체납 시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도세와 시세의 징수 순위) 지방세는 도세, 시세의 순서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법 제65조에 따라 시장이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와 그 경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①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시 자료제공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한다.

- 1. (생략)

제11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 체납한 -----

----- 체납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

제12조(도세와 시세의 징수 순위) ----- 징수하고, 도세나 시세 중에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징수하여야 -.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①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기 10일 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무관청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① -----

- 1. (현행과 같음)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③ (생략)

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 처분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생략)

2. 징수유예 등 사유와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생략)

제16조(공탁 등) ①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시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8조(시세의 수납) ① 영 제61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을 말한다.

② (생략)

2. ----- 내의 경우에 한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이미-----

1. (현행과 같음)

2. ----- 등의 사유가 있거나 -----

3. (현행과 같음)

제1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

----- 시금고-----

<단서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 -----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①·② (생략)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시장은 법 제 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 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세무공 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금고에 의뢰하여 보 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 · 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 필증 또는 등록필증

② (생략)

제32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 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체납자 의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 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용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는 시세의 체납처분은 공유 물 전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34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

제22조(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

----- 요구하여야 -----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

1. ~ 5. (현행과 같음)

----- 마친 -----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

----- 공유자 -----

제34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

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 납부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 로서 연간 3건 이상(균등분주민세,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8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할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 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금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 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 매기일의 전일까지 같은 조제5항 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시세를 우선 징수한다.

3. ~ 8. (생략)

제47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시장은 법 제140조에 따른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 제외 한다)으로 -----

제38조(배분방법) -----

1. (현행과 같음)

2. ----- 영 제86조 제1항 -----

3. ~ 8. (현행과 같음)

제47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 고액 · 상습체납자(도세 -----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위원의 해촉) -----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 2. - 4. (생략)

- 1. 질병, 그 밖의 -----
- 2. - 4. (현행과 같음)

삼척시공고 제2014-369호

「삼척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삼척시장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및 주민세의 일부 변경됨에 따라 시세의 세목 과 과세대상 및 세율을 새로이 설정하고 신설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가.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용어의 명확화(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14조, 안 제17조제1항, 안 제18조, 안 제19조)
- 나.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 정비 및 사업자 및 법인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세율을 따르도록 함(안 제6조).
- 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함(안 제3절 신설).
- 라. 지방소득세 소득분에 대하여 종합소득, 양도소득 및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개인 및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신설하고 그 세율은 「지방세법」의 세율을 따르도록 함(안 제11조)
- 마.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의 세율을 따르도록 함(안 제12조, 안 제15조)
- 바.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세액을 산출세액 10만원 이하로 함(안 제16조)
- 사. 자동차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의 세율을 따르도록 함(안 제24조).

3. 행정사항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삼척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관·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우 245-701)

삼척시청 세무과(☎033-570-3297/팩스570-3134)

강원도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없으면 「지방세법」,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를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외”를 “법 제78조제1항의 주민세 균등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제6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동 지역 : 3,600원

나. 읍면지역 : 2,000원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 법 제78조제1항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3.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를 “같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9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 앞의 “제4장 지방소득세”를 삭제한다.

제9조 앞의 “제1절 소득분”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 앞의 “제2절 종업원분”을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세율)”을 “(신고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업의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의 제목 “(신고의무)”를 “(세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같은 조 제3항까지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의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 중 "주택"을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으로, "5만원"을 "10만원"으로, "부과·징수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 중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를 각각 "다만,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를 "다만,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를 "다만,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로 한다.
 제24조 중 "법 제127조"를 "법 제127조제3항"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를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의 주민세 균등분-----
1. 개인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동 지역 : 3,600원, 읍면지역 : 2,000원	가. 동 지역 : 3,600원
나.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나. 읍면지역 : 2,000원
2. 법인	2.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 법 제78조제1항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53조제1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범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범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범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신 설>

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생략)

3. 시에 사업소물 둔 법인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세율) ① ----- 같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

제9조(세율) ①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2절 종업원분

제10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신 설>

<신 설>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제3절 종업원분

<삭 제>

<삭 제>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삭 제>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같은 조 제3항까지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신 설>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100분의 2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1억원 초과금 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 억원이하	40만원+2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 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답·과수원·목작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

③ 법 제103조의2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항에 따른 골프장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외 영 제97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60,000원+6천만원 초과금 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 과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이하	570,000원+3억원 초과금 액의 1000분의 4

4. 선박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제14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
· ② (생략)
제15조(과세특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
분의 1.4로 한다.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
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
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
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
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략)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
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
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
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
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
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

제14조(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
시) ①·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
한다.

제16조(납기) -----
-----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
백-- 10만원 -----
-----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

----- 다만,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

1. ~ 7.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

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
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
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 5. (생략)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
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
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원도 도세 조
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
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초과	24원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다만,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

1. ~ 5. (현행과 같음)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

----- 다만, 「강원도 도
세 조례」 제5조-----

1. ~ 5. (현행과 같음)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
제3항-----
-----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
을 적용한다.

1. ~ 6. <삭 제>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이하	45,0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6. 3륜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삼척시공고 제2014-370호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삼척시장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근거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법령상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감면 대상 및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가. 감면 대상 및 범위의 명확화(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감면 기간의 일몰로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안 제3조).
- 다. 문구 중 불필요한 부분 삭제(안 제5조, 안 제8조)
- 다. 농공단지 대채임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고자 3년을 5년으로 연장함(안 제7조).
- 라. 근거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5조제1항, 안 제16조)

3. 행정사항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삼척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우 245-701)

삼척시청 세무과(☎033-570-3297/팩스570-3134)

강원도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를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감면·추징 등”을 “감면”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법 제17조제1항 각 호”로, “감면신청하는”을 “감면 신청하는”으로, “다음”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를 “부동산(이미”로 한다.

제7조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8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를 “법 제9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를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공제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을 “영 제126조제1항”으로, “감면신청서류”를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지방세”를 “시세”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48조”를 “제12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삼척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u>감면</u> ----- ----- <u>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u> ----- ----- -----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활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u>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u> ----- ----- ----- <u>의하여</u> ----- <u>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u> ----- ----- ----- <u>법 제17조제1항 각 호</u> ----- ----- <u>감면 신청하는</u> ----- ----- -----

취득하여 등록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절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고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 법 제17조제1항 각 호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삭 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3. (생략)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

<삭제>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 -----

----- 부동산 (이미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

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삼척시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증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당해 공장관리기관 또는 당해 공장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관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른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

면) -----

----- 5년간 -----

제8조(삼척시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

----- <단서 삭제>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법 제92조의2 -----

부에 대한 세액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시세가 병기(併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1. 2. (생략)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감면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은 영 제48조를 준용한다.

-----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공제한다.

1. 2. (현행과 같음)

제12조(감면 제외대상)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제15조(감면신청) ① ----- 영 제126조제1항-----
-----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 시세-----
----- 제127조-----

삼척시공고 제2014-371호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삼척시장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근거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법령상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별지 서식 및 별표를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용어의 명확화(안 제6조, 안 제12조, 안 제15조, 안 제18조, 안 제21조제2항, 안 제24조제1항, 안 제30조, 안 제31조, 안 제32조제1항제5호, 안 제34조제3항, 안 제36조, 안 제38조, 안 제44조제2항, 안 제46조제3항, 안 제60조제4항, 안 제78조, 안 제79조제1항, 안 제80조제3항, 안 제82조, 안 제85조제1항, 안 제99조제1항, 안 제100조)
나. 별지 서식 및 별표의 정비(안 별지 제1호 서식, 안 별지 제11호 서식, 별표를 삭제)

3. 행정사항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삼척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우 245-701)

삼척시청 세무과(☎033-570-3297/팩스570-3134)

강원도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 · 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 · 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7조제3항”을 “제8조제3항”으로, “제8조에 따른 보통우편”을 “제9조에 따른 일반우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제3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제4조에 따른”을 “제4조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를 참고하여”를 “법 제7조의 구분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주민등록번호”를 “납세자번호”로,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납세자번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소 : 법에 따른 송달지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제12조제2항제10호 단서 중 “「사무관리규정」 제21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신고납부서”를 “납부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제17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를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1호 및 제26호서식”을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의 OCR”를 “별지 제11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제9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0조”를 “법 제81조”로 한다.

제30조 중 “제19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시세환급금의 환부절차)”를 “(시세환급금의 지급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환급금지급필통지서”를 “지방세환급금지급확인통지서”로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제37조”를 “제38조”로 한다.

제36조 중 “제27조”를 “제28조”로 한다.

제38조 중 “제28조”를 “제29조”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질물요구”를 “요구”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인정하는”을 각각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의해”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공탁)”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15조제2항”을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0조제3항 중 “제79조”를 “제79조 및 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68호서식의”를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정리계획”을 “회생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정하는”을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제37조”를 “제38조”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제46조”를 “제47조”로 한다.

제100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는 삭제한다.

부 칙

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한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자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다.

6. ~ 9. (생략)

10. 직인 : 법, 지방세관계법 및 조례에 따른 과세권자를 기재하고 관인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관리규정」 제21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인을 인쇄하거나 전자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 (생략)

제14조(신고납부 시세의 처리) ①·② (생략)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신고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납세자에게 직접 수령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우편, 모사전송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으로 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기한내에 신고납부서를 수령하여 수납기관에 해당 시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6. ~ 9. (현행과 같음)

10. -----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 -----

11. (현행과 같음)

제14조(신고납부 시세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납부서 -----

④ ----- 납부서 -----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신고접수대장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시세의 수납) ① 시세는 수납기관이 아니면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납과 징수관의 명에 따라 채납처분에 따른 교부청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을 수납한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에 따른 현금영수증서원부에 따라 영수증을 납부자 또는 그 대리인 등에게 교부하고 수납부 등 관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및 제26호서식을 작성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서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소인불일치자료 등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소인하였으나 부과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원인을 규명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OCR 미소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제15조(시세의 수납) ① ----- 제18조제1항 -----

② -----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

③ ----- 별지 제22호 서식 -----

제18조(소인불일치자료 등의 처리) ① ----- 별지 제11호서식의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결정취소 및 오류정정) ① (생략)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9호서식의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4조(부과철회) ① 별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한 시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징수유예일부터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조사하여도 그 징수를 확보할 수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과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 ④ (생략)

제30조(시세환급금의 통지 등)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송달불능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른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시세환급금의 환부절차) ① (생략)

제2항

제21조(결정취소 및 오류정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별지 제9호서식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부과철회) ① 별 제81조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시세환급금의 통지 등) --- 제20조제1항

제31조(시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현행과 같음)

략)

② 시금고는 시세환급금의 환급을 받을 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지급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지급필통지서를 징수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85조 제3호에 따라 시장이 납세담보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산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 ⑤ (생략)

제34조(납세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환가금액이 징수할 시세에 상당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37조의 공매대금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시세확정 전 보전압류) 조례 제27조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징수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수색)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색 조서는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한다.

제44조(압류된 질물의 인도요구) ① (생략)

행과 같음)

②

지방세환급금지급확인통지서

제32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1. ~ 4. (현행과 같음)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납세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38조

제36조(시세확정 전 보전압류) --- 제28조

제38조(수색) --- 제29조

제44조(압류된 질물의 인도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질물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질물을 압류하여야 한다.

제46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①·② (생략)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60조(공매공고)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3항의 의해 공매공고 또는 취소공고를 하는 때에는 게시와 함께 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78조(공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전예탁통지서는 별지 제63호서식,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제79조(공매대행의뢰) ① 세무공무원은 압류한 재산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② ----- 요구 -----

제46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인정되는 -----

----- 인정되는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공매공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규정에 따라 -----

제78조(교부금전의 예탁) --- 제16조 제2항

제79조(공매대행의뢰) ①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0조(압류재산의 인도) ①·② (생략)

③ 제79조에 따라 정당하게 공매의뢰 및 압류재산 인도를 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하기에 부적절한 물건으로 판명되어 그 물건이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인수거부내용을 기록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제82조(공매대행 중지조치)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공매대행중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모사전송 등으로 공매대행중지요구를 송부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정리계획에서 정수유예 또는 환가의 유예가 인가된 경우

8. (생략)

② (생략)

③ 세무공무원은 공매중지 사유가 해소되어 공매절차의 계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매재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하여 공매절차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5조(매각대금의 배분) ① 세무공무

제80조(압류재산의 인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79조 및 제1항의 규정 -----

제82조(공매대행 중지조치) ① -----

-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라 -----

1. ~ 6. (현행과 같음)

7. ----- 회생계획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인정되는 -----

제85조(매각대금의 배분) ① -----

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수한 공매대금을 조례 제37조에 따라 배분되되, 매수대금완납통지서 및 공매대행수수료 등의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에 공매대금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99조(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공개 심의요청 등) ① 시장은 조례 제46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고액·상습채납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3천만원 이상 채납자 현황 자료를 기초로 공개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요청해야 한다.

②·③ (생략)

제100조(과세표준 심의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8조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9조(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공개 심의요청 등) ① ----- 제47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0조(과세표준 심의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 법 -----

삼척시공고 제2014-372호

「삼척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삼척시장

삼척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근거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법령사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별지 서식은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가.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용어의 명확화(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7조제2항, 안 제21조제2항, 안 제23조제1항, 안 제26조, 안 제27조)
- 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함(안 제3절 신설).
- 다. 별지 서식을 정비(안 별지제7호 서식, 안 별지 제8호 서식, 안 별지 제9호 서식, 안 별지 제11호 서식, 안 별지 제12호 서식, 안 별지 제14호 서식, 안 별지 제15호 서식)

3. 행정사항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삼척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우 245-701) 삼척시청 세무과(☎033-570-3297/팩스570-3134)

강원도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시세 부과 · 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삼척시 시세 부과 · 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확인하여 주민세”를 “확인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지 제37호의2호 서식의 주민세(균등분)”로 한다.

제5조 중 “확인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5호 서식의 주민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를 “확인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호 서식의 주민세(균등분) 과세대장을 정리해야”로 한다.

제6조 중 “주민세를”을 “주민세(균등분)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납부한 주민세”를 “납부한 주민세(재산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세”를 “주민세(재산분)”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세”를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의 주민세(재산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세”를 “주민세(재산분)”로 한다.

제10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10조 앞의 “제4장 지방소득세”를 삭제한다.

제10조 앞의 “제1절 소득분”을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신고 및 납부처리)”를 “(신고 및 납부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조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종업원분)”이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

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소득세”를 각각 “주민세(종업원분)”로,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를 “이들 제1항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미납부 및 과소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 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보통징수)”를 “(과세대장 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인 주민세(종업원분)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3조 앞의 “제2절 종업원분”을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신고 및 납부 처리)”를“(신고 및 납부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02조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를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으로, “별지 제14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부서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 23 및 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부서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소득세(소득분)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지방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과세자료처리부에 각각 기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중 “조폐”를 “「삼척시 시세 조례」”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자동차세(소유)”를 “자동차세”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확인하여”를 “확인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서식의 자동차세”를 “서식의 자동차세(주행)”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7조 중 “서식의 자동차세”를 “서식의 자동차세(주행)”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지방소독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납세번호	납세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납부구분	성명(법인명)	신고지 주소		귀속연도	과세표준 고지 주소지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금액	수납일
				양도 물건	신고지 주소							
합계												

합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364mm X 257mm (일반용지 80g/㎡)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1호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점수 일자	법인명	전화번호	주 수 별 인 등록번호	범인세	관 할 사무서	세출	본세	가산세	결 제			
										계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X 210mm (일반용지 80g/㎡)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징수) 부과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3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9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② -----
- 주민세(종업원분) -----
----- 이를 제1항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미납부 및 과소납부 -----.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

제11조(보통징수) 부과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인 주민세(종업원분)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절 종업원분

제13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서의 장은 법 제102조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삭 제>

제1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
-----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

-----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

② 부과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서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 2 3 및 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파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0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④ 부서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파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소득세(소득분)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파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지방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과세자료처리부에 각각 기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비과세 관리) ① (생략)
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의 재산폐지신고는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한다.

제21조(연세액 일시납부) ① (생략)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3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자동차세를 과세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6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37조 및

제17조(비과세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삼척시 시세 조례」 -----

제21조(연세액 일시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자동차세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과세대장 정리) ① -----

- 확인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

----- 서식의 자동차세(주행) -----

② -----

<p>지방세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신고 또는 납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자료를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처리부와 대조하여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제27조(보통징수) 부과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자동차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 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p>	<p>「지방세법 시행령」</p> <p>-----</p> <p>-----</p> <p>-----</p> <p>-----</p> <p>-----</p> <p>-----</p> <p>-----</p> <p>-----</p> <p>제27조(보통징수) -----</p> <p>-----</p> <p>----- 서식의 자동차세(주행) -----</p> <p>-----</p> <p>-----</p>
---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7.5.18>

폐업신고서		(앞 쪽)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① 성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영업의 종류 (허가일 또는 등록일)	()
	⑤ 폐업일	
	⑥ 폐업사유	
<p>「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수수료
		없음
<p><구비서류></p> <p>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p> <p>※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p>		

삼척시공고 제2014-373호

「삼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삼척시장

삼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문의 정비(안 제2조제1호, 안 제20조제2항)

3. 행정사항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삼척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우 245-701)

삼척시청 세무과(☎033-570-3297/팩스570-3134)

강원도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삼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 조사”를 “법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지방세범칙조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조세범칙조사”를 “지방세범칙사건조사”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청명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 [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연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삼척시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세무과(세무조사부서)
 우편번호 : 245-701

※ 문의사항 전화 : (033) 570-3287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원장 제출)

○ 법인 명 : (인) ○ 대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계 기 ~ 계 기) ○ 적 성 자 : (근부세) (정액) (인) (전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	법인유형	주 요 목적사업
	계 조 업 () 건 설 업 () 관 매 업 () 운 송 업 () 기 타 ()	

삼척시청 귀하

서 식 목 차

-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 2. 주민세(재산분) 신고 명세서
- 3.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면적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매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연도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연도	사업장소재지	경년도 산책시 유·면·동 리 번지 호	사업장명
------	--------	----------------------	------

(단위 : 원)

구분 원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합 계 (과세표준액)	② 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 액	납부 일차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법인세 제98조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 서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7조(납세지 등) 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의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정부 등에 외거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의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에”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 등

법인세법 98조(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따른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출지방소득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표준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시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삼척시 소재 사업장)

<사업연도 : , 사업장명 : >

(단위 : 원)

구분	월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① 근로소득	급여															
	상여															
② 비과세소득	③소계															
	연장															
④ 중립원수	차방															
	⑤소계															
⑤ 중립원수	관리															
	생산															
⑥ 과세표준	수시															
	계															
⑦ 산출세액 ⑧×(0.5/100) 기납부액	급여지급액															
	기납부액															
납부원차																

* 반드시 인도된 전산서상의 급여, 상여, 장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장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 서식 3.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삼척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는 평균 인원을 합한 인원수로 산정
-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㉔)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세무조사”라 함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6조에 따라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죄사건 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 ----- ----- ----- ----- 법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지방세범처조사-----.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제20조(수색, 영치의 금지) ① (생략)	제20조(수색, 영치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조세범처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 ----- 지방세범처조사-----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삼척시공고 제2014-374호

「삼척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삼척시장

삼척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대통합 위원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기여하고, 상위법령의 근거조항 개정,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상의 상위법령 근거조항 개정(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

나.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용어 개정(안 제2조제4호)

- 폐질등급 → 장애등급

다. 보상금 인정범위에 대한 준용규정 개정(안 제3조)

-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총무처 훈령) → 국가에서 정한 공무상재해 인정기준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삼척시청 기획감사실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우편번호:245-701

전 화 : 033-570-3215 FAX : 033-570-313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삼척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을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직무”라 함은”을 ““직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정활동비”라 함은”을 ““의정활동비”란”으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부”를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족”이라 함은”을 ““유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상해”라 함은”을 ““상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총무처 훈령)”을 “국가에서 정한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의원 당해연도”를 “강원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해당연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시장”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다만, 시”를 “다만, 삼척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보상심의회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1조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삼척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u>각 호</u> -----
1. “직무”라 함은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1. “직무”란----- -----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 <u>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u> -----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3. “유족”이란----- -----
4.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라 함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란-----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 ----- <u>각 호</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4. <u>그 밖에</u> -----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u>공무상장애 인정기준(총무처 훈령)</u>을 준용한다.</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u>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u></p> <p>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u>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u></p> <p>가. ~ 하. (생략)</p> <p>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 가목의 보상금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p> <p>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생략)</p> <p>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권자가 <u>삼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을 경유하여 <u>시장</u>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u>영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u>에 의한 <u>삼척시의회의원 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u>에서 기간 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p> <p>② ---- <u>각호</u> ---- -----<u>국가에서 정한 공무상장애 인정기준</u>-----</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 ----- <u>각호</u> -----</p> <p>1. ----- ----- <u>강원도회의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해당연도</u>-----</p> <p>2. ----- ----- <u>해당연도</u>-----</p> <p>가. ~ 하.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의</u> -----</p> <p>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u>삼척시장</u> (이하 "<u>시장</u>"이라 한다). ----- <u>영 제35조제2항</u>에 따른-----</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7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u>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u></p> <p>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보상심의회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p> <p>② (생략)</p> <p>제9조(보상심의회 회의) ①·② (생략)</p> <p>③ 보상심의회는 <u>제5조제3항의 규정</u>에 의한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10조(간사) ① 보상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p> <p>② (생략)</p> <p>제11조(수당 등)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7조(위원의 임기) ----- ----- ----- <u>다만, 삼척시</u> -----</p> <p>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 ----- <u>보상심의회</u>의 사무를 통할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보상심의회 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제5조제3항</u>에 따른-----</p> <p>----- ----- ----- ----- ----- ----- ----- <u>범위</u>-----</p> <p>제10조(간사) ① ----- ----- <u>1명</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수당 등) ----- ----- <u>대해서는 예산</u> <u>의 범위</u>-----</p>